##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94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천준호・이병진・한준호

모경종 · 김현정 · 박상혁

박홍근 • 윤종군 • 허 영

이강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 등을 예치하는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두고, 자활지원사업 및 소액생계비대출 등 일부 서민금융 지원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자활지원계정을 두며,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자금 일부를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휴면예금의 원금은 원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정책 목적에 따라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하지 않고, 휴면예금 원금 운용수익만 전출하여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활용해 왔음.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에 들어온지 10년이 넘은 휴면예금들의 경우 2023년 한 해 동안 지급률이 2%대에 불과하여, 당해 혹은 전년에 들어온 휴면예금들 지급률이 15%대인 데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서는 이미 회수할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회수가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있음.

실제로 2023년말 기준, 10년 이상 예치된 휴면예금 원금의 잔액을 합하면 3,624억 원 규모로, 이 중 일부를 서민금융지원에 활용함으로 써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이 보다 폭넓게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불법사채 등 금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춰야 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휴면예금 원금 중 10년 이상 보관된 예금에 대하여는 자활지 원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취약 계층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2조제2호). 법률 제 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호 중 "전출"을 "전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휴면예 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을 포함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			
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	2		
활지원계정으로의 <u>전출</u> <u>&lt;단</u>	<u>전출.</u> 단,		
<u>서 신설&gt;</u>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휴면예금등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전을 포함할 수		
	<u>있다.</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